

● **환경부령 제991호**

**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**2022년 06월 22일**

**환경부장관** 인

**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**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4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3의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